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국 제 금 융 기 구 에 의 가 입 조 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무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5,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00만 미합중국 달러
출연

아.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291억8천9백
만원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238억4천9백만원 출연

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타.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
러 출연

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파견 프로그램에 130만 미합중
국달러 출연

하.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에의 8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기금에의 8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다자투자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의 119억원 출연

러.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
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 외에는 2021년도 예산
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10, 별표 12, 별표 14, 별표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별표 17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억6천280만 특별인출권
2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 출연	2천770만 특별인출권
3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3억3천680만 특별인출권
4	국제통화기금의 확대구조조정금융에 출연	830만 특별인출권
5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8억3천4백만 특별인출권
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 금융 신탁기금에 출연	1천63만 특별인출권
7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 센터계정에 출연	45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12억9천370만 특별인출권
9	국제통화기금의 라이베리아 지원금융에 출 연	713만9천270 특별인출권
10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4억3천910만 특별인출권
11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 센터계정에 출연	10억원
12	국제통화기금의 자연재해 및 분쟁종식국가 긴급지원계정에 출연	10억원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 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기금에 출연	2억4천6백만원
15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52억1천630만 특별인출권
16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 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7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기금에 출연	20만 미합중국달러
18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 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19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20	국제통화기금의 태평양제도 금융기술지원 센터계정에 출연	6억2천500만원

2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989만8천25 특별인출권
22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20만 특별인출권
23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4	국제통화기금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출연	2천476만3천414 특별인출권
25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6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27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8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9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0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31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32	국제통화기금의 소말리아 지원금융에 출연	443만3천365 특별인출권
33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변”이란 대통령령 제112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통화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9억3천720만 미합중국달러
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50만 미합중국달러
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4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7억7천7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130만 미합중국달러
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42만 미합중국달러
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47만 미합중국달러
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신탁기금에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 출연	65억원
1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 출연	30억원
1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출연	4억원
1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 출연	123억원
1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 출연	46억원
1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출연	4억9천200만원
1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술지원기금에 출연	36억9천만원
1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출연	33억원
1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3억9천400만원
1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경제지원 평화구축신탁기금에 출연	92억원

2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 출연	19억4천400만원
2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2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기술지원기금에 출연	28억7천500만원
2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출연	272억900만원
2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48만 미합중국달러
2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 출연	11억5천만원
26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25억9천341만1천230 미합중국달러
2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식량가격 위기 지원 신탁기금에 출연	18억9천400만원
2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고용과 성장 신탁기금에 출연	40만 미합중국달러
2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출연	272억900만원
3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3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변화를 위한 지식프로그램기금에 출연	10억7천만원
3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출연	64억200만원
3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07억원
3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출연	56억5천만원
3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44만 미합중국달러
3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출연	33억9천만원
3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13억원
3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240억8천만원
3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4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4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58만 미합중국달러

4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27억4천400만원
4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12억원
4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4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 에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4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4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20억6천만원
4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03억원
4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450만 미합중국달러
5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140만 미합중국달러
5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5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30억8천900만원
5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100만 미합중국달러
5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5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5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32만 미합중국달러
5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5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5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6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 화구축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109만 미합중국달러

6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6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6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200만 미합중국달러
6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6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 탁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 화구축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6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 출 연	268만 미합중국달러
7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일반증자에 출자	9천76만5천774 미합중국달 러
7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특별증자에 출자	2천894만5천161.9 미합중국 달러
7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7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7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7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천만 미합중국달러
7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7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 탁기금에 출연	700만 미합중국달러
7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 화구축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7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 출 연	332만 미합중국달러
8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 그램에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8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 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8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400만 미합중국달러
8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 트너십에 출연	80만 미합중국달러
8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1천700만 미합중국달러

8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8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 출연	332만 미합중국달러
8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5천800만 미합중국달러
88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89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90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80만 미합중국달러
91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여성기업가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92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변”이란 대통령령 제1303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부흥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134만8천105 미합중국달러
2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247억4천412만원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244억2천230만700원
4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323억4천738만9천 원
5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280억8천96만원
6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939억4천405만8천 원
7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7천862만 특별인출권
8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9천118만 특별인출권
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출자 및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1억2천858만 특별인출권
11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82억5천274만원
12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2천596억751만원
13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출자 및 출연	877억4천507만원
14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3천961억2천893만원
15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4천282억2천765만원
16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4천645억7천295만원
17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출자 및 출연	1천433억7천846만원
18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및 출연	5천284억7천856만원
19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출자 및 출연	414억2천490만원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03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개발협회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4]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537만6천 미합중국달러
2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363만7천 미합중국달러
3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693만3천 미합중국달러
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5	국제금융공사의 중소기업혁신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6	국제금융공사에 특별증자 출자	1천214만9천 미합중국달러
7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5만3천 미합중국달러
8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9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0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11	국제금융공사에 일반증자 출자	7천139만 미합중국달러
12	국제금융공사에 특별증자 출자	3천704만 미합중국달러
13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152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금융공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8억9천123만 미합중국달러
2	아시아개발은행의 기술원조특별기금에 출연	190만 미합중국달러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850만 미합중국달러
4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10억7천513만5천310.5 미합중국달러
6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5천427만 미합중국달러
7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8천141만 미합중국달러
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1억1천276만1천 미합중국달러
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	2천만 미합중국달러
1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1천447억9천991만493원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12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43억54만1천242 미합중국달러 (1억7천202만5천510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	73억8천만원
14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1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	600만 미합중국달러
16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1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	85억6천만원
18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1천912억5천662만7천600원
19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출자	500만 미합중국달러

20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90억4천만원
21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89억6천만원
22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82억4천만원
23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4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987억5천345만404원
25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6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27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1천800만 미합중국달러
28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92억3천100만원
29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 사업기금에 출연	291억8천900만원
30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238억4천900만원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1211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4천948만9천500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844만4천 계산단위
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924만8천321 계산단위
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400만 계산단위
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466만6천667 계산단위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40만6천533 계산단위
7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2천164만9천504 계산단위
8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2억7천53만원
9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31억2천976만8천200원
10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3천247만4천255 계산단위
11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34억5천128만8천716원
12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5천385만7천951 계산단위
13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5천764만9천727 계산단위
14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45억6천504만744원
15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
16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 금에 출자	63억3천598만862원
17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1천123억4천426만304원
18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 기금에 출자	58억9천787만4천61원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259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입금액란의 “1 계산단위”란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7]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5천996만 계산단위
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자문신탁기금에 출연	200만 미합중국달러
3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3천715만 계산단위
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5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66억원
6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1억9천501만 계산단위(1천17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82억400만원
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91억4천300만원
9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69억5천500만원
1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90억4천만원
11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78억4천만원
12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72억1천만원
13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1천435만 계산단위(86만1천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4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15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841만 계산단위(50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6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17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18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19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3억8천644만 계산단위(2,319만 계산단위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225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8]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133만1천699 계산단위
2	상품공동기금의 제2계정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259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상품공동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9]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449만 특별인출권
2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342만 특별인출권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3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투자보증기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0]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30만 미합중국달러
4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6천500만 유럽통화단위
5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7천만 유럽통화단위
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50만 미합중국달러
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53억원
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3억원
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43억500만원
1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2억3천만원
11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1억14만 유로(1천10만 유로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1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4억5천만원
1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1억5천만원
1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4억5천만원
1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1억5천만원
1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3억9천만원
1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1억3천만원
1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3억6천만원
1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1억2천만원

2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억9천만원
2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억3천만원
2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28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29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0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4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 및 인턴 파견 프로그램에의 출연	13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330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1천655만4천 골드프랑
2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505만9천265.16 스위스프랑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520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국제결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2]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221만9천671.56 미합중국달러(9만6천507.46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2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5천만 미합중국달러
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5천만 미합중국달러
4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266만6천18.53 미합중국달러(6만317.15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5	미주개발은행의 특별운용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6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85억6천만원
7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90억4천만원
8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22만9천205.22 미합중국달러(전액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9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89억6천만원
10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82억4천만원
11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815만 미합중국달러
12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70만 미합중국달러
13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830만 미합중국달러
14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15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16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17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760만 미합중국달러
18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860만 미합중국달러
19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87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미주개발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110만 미합중국달러
2	미주투자공사의 중소기업개발신탁기금에 출연	4천만 미합중국달러
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40만 미합중국달러
4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6만 미합중국달러
5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87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미주투자공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4]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	6천만 미합중국달러
2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3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4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1877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 이후 다자투자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기금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다자투자자기금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 (7억4천776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2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출연	800만 미합중국달러
3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출연	1천만 미합중국달러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26765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를 말한다.
2. “납입금액”이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에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6]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4억5천만 미합중국달러(1억1천25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2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1억8천만 미합중국달러(4천500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으로,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3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119억원
4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119억원

비고

1. “연번”이란 대통령령 제30938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이 영 개정예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 순서로 한다.
2. “납입금액”이란 중미경제통합은행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7]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

연번	납 입 대 상	납 입 금 액
1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80만 미합중국 달러

비고

1. “납입금액”이란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대해 종전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 외에 이 영 개정예 따라 신규로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 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 는 출연한다.	①----- ----- -----.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 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